

「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
- 제안일자 : 2026. 02. 25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함으로써 군민과 방문객의 이용 접근성을 높여 군민과 방문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, 인근 에코랜드 및 물환경체험관 등과 연계되는 권역 단위의 문화·환경 체험권을 형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관람료 전면 무료

〈참고〉 현행 관람료 기준[별표2]

구 분	어른(19~64)	청소년(13~18), 군인	어린이(7~12)
개인	2,000원	1,500원	1,000원
단체(20명 이상)	1,500원	1,000원	500원
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로 보고 있음

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관광 거점과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에서 “관람료”를 삭제하고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에서 각각 대표시간, 관람료, 관람료의 감면 등을 삭제하였음.
-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, 관광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**지방자치법**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시·도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~ 7. (생략)